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의무화〉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04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 관	2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의무화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III. 검토의견

1. 개 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 -----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의 공표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구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요 인명사고를 뜻하는 중대재해를 다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사업주 등의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등
제3장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관련 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행위 제재 등
제4장	보 칙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심리절차의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등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나 일정한 인원 이상의 부상자·질병자를 야기한 것을 의미함(제2조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노무제공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임(동법 제2조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중대산업재해는 노무제공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시설물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나 일정한 인원 이상의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함(제2조제3호).

- 중대산업재해의 개념과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이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므로 양자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단서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규율하게 됨.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는 주로 각종 제조물이나 시설 등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사고 유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방지에 책임있는 자는 모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사업주등)으로 같은데, 동법에서 사업주등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등도 포함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만, 의무 위반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때 부과되는 제재 내용의 경우 재해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적용되는 반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미수강 시 과태료 부과와 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됨.

< 재해 유형별 재해 발생 시 제재 >

구 분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교육 수강/과태료	발생사실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산업재해	○ (제6조, 제7조)	○ (제8조)	○ (제13조)	○ (제15조)
중대시민재해	○ (제10조, 제11조)	-	-	○ (제15조)

2) 중대산업재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행위 제재

-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업주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③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시정명령 등 이행, ④ 기타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내용으로 함(제4조).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등이 업무 일부를 도급·위탁하는 등으로 다른 자가 업무의 이행을 담당하게 되면 수급인·수탁자 등이 그 업무의 사업주등에 해당하므로 그 수급인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가 됨. 다만, 도급·위탁한 사업주등이 업무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위탁한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5조).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주등이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안전보건교육, 재해 발생사실 공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제6조·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등).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특히 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¹⁾ 사업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 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음.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제8조 역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만 적용됨.

- 제13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동 공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의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 사실 등의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 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 현재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의무화

가. 조문에 대한 검토

- 안 제13조제1항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제13조와 같은 의무 위반 사실의 공표는 법령상 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일반에 알려 여론의 압력을 받게 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²⁾ 공표의 내용과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2)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 206-207. 본 글에서는 사업주등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위협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데에 해당 조문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

다만, 공표가 법령상 의무 위반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의무 위반 여부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공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해되므로, 그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명하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명령이 과잉 금지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³⁾

이 사건 공표명령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것은, 만약 그 행위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행위자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는 것으로 일반에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행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 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와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3) 해당 조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을 규정하고 있어 진술거부권 침해도 문제되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는 제4조 위반을 공표의 전제로 하고 있어 그 공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제6조 등에 따른 범죄행위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와 같이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u>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u>제12조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u>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위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유죄확정이나 처벌을 공표의 전제로 하는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제1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18제1항), 「모자보건법」(제23조제1항) 등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채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위반사실의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한편,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두어 언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고용노동부는 현행법하에서도 반기(半期)를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건을 공표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으나 공표를 의무화할 경우 공표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표의무를 부여할 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나 사업장 규모, 형량, 피해자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표를 강제하는 것은 영세·중소사업주의 생존권이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노동계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